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주택과장
제출 연월일	2015.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안 제5조 외)
-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안 별지 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5. . . ~ 2015. . .) 결과,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2015.12.03.)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여성가족과(2015.1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 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을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0만원미만 일”을 “50만원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급하고자할”을 “지급하고자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를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단서규정”을 “단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는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로, “1개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서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지급 할 수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지급명세표”를 “보상금 지급명세표”로, “날인받아야”를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첨부2. 주민등록등본 1통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1.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철거위치 : 구 동 번지 호 (통 반)

3. 철거일시 : 년 월 일

4. 보 상 액 : 원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

첨부 : 인감증명 1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color: red; text-decoration: underline;">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text-decoration: underline;">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자) <u>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u> 무허가 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u>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u>각호의 1에 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u>범위내에서</u>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p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u>-----</p> <p>제2조(지급대상자) <u>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 해당 --. ----- 단서에 따라 ----- 각 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범위에서</u>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
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
액이 50만원미만 일 경우에는 5
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
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
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
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감정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
---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
기준은 2개 이상 -----

----- . -----
----- 50만원 미만인 -----
----- .

② -----
----- 따라 -----
----- .

③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 지급하
고자 할-----

----- .

② 제1항에 따라 -----

----- 각 호의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
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
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
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
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
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
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
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
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
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 제4조에 따라 -----

-----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 단서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

----- 1개월 이내 -----

----- 단서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

----- 제6조에 따른 -----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 건물의 철거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아야 한다.

제8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할 수 있다.

② ----- 보상금 지급명세표-----
----- 날인하여야 -----
-----.

제8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

----- 그 밖에 -----
----- 경우에는 -----
-----.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8.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